

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 사 경 위**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6. 14 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05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6. 22(화) 제12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4. 6. 21) 상정·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**

(기획감사실장 김학근)

가. 제안이유

-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.

나. 주요골자

-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8,152천원으로서 이중 1건에 46,49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도암면사무소 난방기 및 난방배관 보수 46,497천원

**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**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6,815만원으로서 이중 1개사업 4,6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으로는  
· 도암면사무소 난방기 및 난방배관 보수 4,649만원으로 적법한 범위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 1부    끝.



#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6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8,152천원으로서 이중 1건에 46,49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

○ 도암면사무소 난방기 및 난방배관 보수            46,497천원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

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-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